

【 3 】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7. 9.

제출자 : 양주시장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장관이 통보한 금년도 총액인건비에 맞는 기구체제를 운영하고 2006년도 조직개편 후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 우리시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조직으로 구축하고자 유사종복 기능 및 직원 수가 소수인 담당은 통폐합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 경쟁력 있는 농업행정 추진과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업행정 조직 일원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함.

□ 주요골자

-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총무국 분장 사무에서 **총보기획** 업무를 추가함.
(안 제5조제2항제9호)
- 농축산과 업무(농지관리 제외)를 주민생활지원국 분장 사무에서 농업기술 센터 소관으로 조정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제12호, 제13호)
-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를 통합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조정함.
(안 제13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제112조 내지 제115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언론보도 및 시정홍보”를 “총보기획 및 시정홍보, 언론보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경제과, 농축산과를 둔다“를 “산업경제과를 둔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12호 내지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중 “제104조제1항”을 “제113조”로,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제2항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제2항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산물 유통, 경쟁력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수산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중 “제105조”를 “제114조”로 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제7조제3항 관련)”을 “(제8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10조제3항 관련)”을 “(제11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13조제2항 관련)”을 “(제14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중 “주민생활 지원국장”을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112조 내지 115조</u>----- ----- ----- ----- ----- ----- ----- -----</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②(생 략) 1.~8.(생략) 9. 언론보도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10.~11. (생략)</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②(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u>홍보기획 및 시정홍보,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u> 10~11 (현행과 같음)</p>
<p>제6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u>산업경제과, 농축산과</u>를 둔다.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 한다. 1.~11.(생략) 12. <u>농정,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축산, 수산에 관한 사항</u> 13. <u>농업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u></p>	<p>제6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 ----- <u>산업경제과를 둔다.</u> ② ----- ----- 1.~11.(현행과 같음) 12. <u>농지관리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8조(설치)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p>	<p>제8조(설치)①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 ----- ----- ②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u>지역보건법</u>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u>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u>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소관사무) ----- 「지역보건법」 -----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13조(소관사무) <u>소장은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항</u> 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3조(소관사무) <u>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u>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산물 유통, 경쟁력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 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수산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① <u>제105조</u>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u>제7조제3항</u> 관련) (별표 2)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 명칭·위치·관할구역(<u>제10조제3항</u> 관련)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u>제13조제2항</u> 관련) (별표 4) 실·국 및 실·과 담당관의 설치기준 (<u>제10조제1항</u> 관련)	제14조(설치) ① 114조 ----- -----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u>제8조제3항</u> 관련) (별표 2)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 명칭·위치·관할구역(<u>제11조제3항</u> 관련)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u>제14조제2항</u> 관련) (별표 4) <삭제>